부당한인사행정처분취소및무효

<table>
<tr><td>소송종류</td><td>행정소송</td><td>법 원 명</td><td>인천지방법원</td></tr>
<tr><td>사건번호</td><td>2018구합○○○○ [1심]</td><td>사건유형</td><td>공무원신분</td></tr>
<tr><td>원 고</td><td>□□□</td><td>피 고</td><td>인천광역시교육감 외 2명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장)</td></tr>
<tr><td>판결선고일</td><td>[1심]2019. 9. 6. 원고패소</td><td>비 고</td><td>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부분 판단
- 피고1(■■중학교장): 각하
- 피고2(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각
- 피고3(인천광역시교육감) : 각하</td></tr>
<tr><td>사건개요</td><td colspan="3">❍ 원고는 2016. 3. 1.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 ■■중학교장은 2017. 5. 26., 2017. 11. 10., 2017. 1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주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table>
<tr><th>회차</th><th>주의일</th><th>위반사항</th></tr>
<tr><td>1차</td><td>2017. 5. 26.</td><td>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수업중 욕설, 모욕, 장애인 비하</td></tr>
<tr><td>2차</td><td>2017. 11. 10.</td><td>성실 의무 위반
(이유)학생 상담 및 공개수업 불성실</td></tr>
<tr><td>3차</td><td>2017. 12. 22.</td><td>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이유)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초래 및 학내 갈등 발생 등</td></tr>
</table>
❍ 피고 ■■중학교장은 2017. 12. 27.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원고가 ■■중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3회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8조 제4호에 따라 비정기 전보 내신(이하 ‘이 사건 전보 내신’이라 함)을 하였음.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8. 2. 1. 원고로 하여금 2018. 3. 1.부터 □□□□중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원고는 2018. 1.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주의처분으로 인해 비정기 전보대상자가 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6.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하 ‘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함),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위 청구가 기각되었음.

❍ 원고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td></tr>
</table>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원고의 피고 ■■중학교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중학교장이 원고에게 한 2017. 5. 26., 2017. 11. 10., 2017. 12. 12. 각 주의처분과 2017. 12. 27. 학교장 주의 행정처분 3회로 인한 비정기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8. 3. 1.자 교육공무원(중등) 인사발령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18. 2. 5. 원고에게 한 보통고충심사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청구 부분: 각하 -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고충심사결정은 <u>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u> ❍ 피고 ■■중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각하 -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u>원고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u> ❍ 피고 ■■중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전보내신의 취소청구 부분: 각하 - 학교장의 전보내신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정기전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u>그 자체가 전보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u>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이 사건 전보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기각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2항은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원고에 대한 민원 조사 당시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들 및 교직원들이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주의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주의처분에 기재된 주의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러한 주의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중학교장이 원고에게 2017. 5. 26.자 주의처분에 대한 주의장을 늦게 전달한 것은 원고가 장기간 병가로 휴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은 모두 적법함. - <u>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주의 처분이 있었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전보처분도 적법함.</u>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중학교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